

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정지원 의원 외 11명

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(정지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3. . .

발 의 자: 정지원 ·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영태
김재우 · 김정도 · 박교상 · 박세채
소진혁 · 이명희 · 이정희 · 장미경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9조)
- 라.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마.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
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·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
2.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
3.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
4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
5. 그 밖에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·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공개모집,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·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운영·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,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.

②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촉 및 해촉)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단,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

2.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% 미만인 경우

3.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

4.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)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3개월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비)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시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, 국·내외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구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

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·연령·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※ 국비 사업
 - 사업비 : 4,000천원
 - 기간 : '23. 3. ~ 12.
 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연간 사업비 4,000천원으로 예상되는 연평균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-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애신